

②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─(내선번호)/전송(02)796─4487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서형석(6535)/ E─mail: kma sh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-00162호

시행일자 2022. 4. 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요일제 관련 재지정 추가 안내(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)

- 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관련근거 :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8014(2022.4.5.)
- 3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예방접종 요일제 관련 재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 및 의료기관에서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내용

- (요일설정) 선택요일을 지정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<u>4.13.(수) 9시 ~4.15.(금) 20시까지 재지정</u> 가능 *요일 자체설정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(교정시설 부속의원 등)을 제외한 요일제 적용기관은 <u>4.13일 이</u>전이라도 관할보건소에서 요일 설정 가능

※ 붙임:

- 1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.
- 2. 코로나19 예방접종 효율화 방안 1부.
- 3. 코로나19 예방접종 효율화를 위한 위탁의료기관 안내문 1부 . 끝.

대 한 의 사 협

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